

의안번호	제호
의결 연월일	2024년 월 일 (제회)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연월일	2024년 11월 1일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4년 11월 1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주문

- 국회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라

2. 제안이유

- 지난해 교권 5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이러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신고 사례의 대부분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문 상황임

- 그러나 신고당한 교사는 무혐의 무죄판결을 받아도 수개월 동안 경찰과 검찰의 조사와 수사를 받으며 오랜 시간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사기 저하, 교육활동 위축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됨
- 이에 비해 신고한 학부모는 어떠한 법적 처벌이나 조치 규정이 없고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적 학대 행위' 조항으로 인하여 '아니면 말고'식의 아동학대 신고가 지속되고 있고, 도를 넘는 무례하고 과도한 요구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교권보호 정책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학교 교육현장에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주요 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여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의 조속한 「아동복지법」 개정과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및 시행을 촉구함

3. 붙임: 건의안

4. 이송처: 대통령실(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교육부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시도교육청 교권보호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364건의 교권 침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3개월 평균 심의 건수 1262.5건을 넘는 수치여서 이 추세라면 지난해 심의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교권침해 피해로 인한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회복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 5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는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교권보호 5법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고 있고 그에 따른 교사들의 고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신고 사례의 대부분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범주 내에서 교사의 교육적 지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어서 실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문 상황이다.

그러나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는 무혐의 무죄판결을 받아도 수개월 동안 경찰과 검찰의 조사와 수사를 받으며 오랜 시간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고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사기 저하, 교육활동의 위축 등 많은 어려움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신고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어떠한 법적 처벌이나 조치 규정이 없고,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 행위 규정 중 모호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 조항으로 인하여 ‘아니면 말고’ 식의 아동학대 신고가 지속되고 있으며, 도를 넘는 무례한 요구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계와 교사단체에서는 교권보호 정책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학교 교육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아동복지법」 개정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주요 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3조의 정의 규정과 제17조 금지행위 규정과 관련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고, 정서적 학대 행위에서도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28조 아동학대 정보의 관리·제공 규정에서 아동학대로부터 무혐의·무죄판결된 경우 교사가 아동학대 행위자로 기록·관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여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교권을 침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아동복지법」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라.

둘째, 정부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라.

. .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